비조치의견서 (□비조치 □조치 ☑기타)

담당자	담당부서	금융투자 준법검사국	담당자 (직위, 성명)	김진국 부국장	연락처	02-3145-7127
	관련부서		담당자 (직위, 성명)		연락처	
요청대상 행위	□ 당사는 IBK금융그룹 자회사로 2010년 IBK금융그룹의 IT표준화 및 안정성, 경쟁력확보를 위해 IT전문 계열사인 ㈜IBK시스템을 통해 IT자원 통합구매를 시행하던 중, 2013년 부문검사시 "전산설비 통합구매 계약 불합리"의 경영유의사항을 지적받아 IT부서에서 직접 경쟁입찰 등의 계약업무를 현재까지 처리하고 있음 ○ 내부 계약규정에 명시된 수의계약을 통해 IT 전문 계열사와 IT 자원 통합구매계약을 체결하고 IT 구매업무 등을 통합구매로 위탁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감독규정제21조*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* 제21조(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계약)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 체결 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1. 적합한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업체 선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・운용할 것 3. 공정하고 합리적인 예정가격 산출 기준을 수립・적용할 것 4. 계약금액, 구축완료일자, 납품방법 및 대금지급방법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 작성 기준을 수립・운용할 것 7. 검수는 개발자, 계약자 등 이해당사자를 배제하여 공정하게 실시할 것 9. 내부감사규정에 따라 감사가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는 자체 감사를 실시하거나 검사부서의 승인을 받을 것					
판단	□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1조 위반 여부는 개별사안에서 거래상대방, 거래조건 등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사안임					
판단이유	□ 기본적으로 수의계약 방식인지 경쟁입찰 방식인지에 따라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21조 위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님(다만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일반적으로 경쟁입찰이 수의계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*)					
	필요한 귀사의	사항을 말하는바	(금융기관검사 공정성 및 투	및제재에관한	·규정§3), 과	주의나 경영상 조치가 거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있다는 점에서 경영유의

- ※ <u>비조치의견서의 효력</u>(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」 제6조의2, 제11조제1항· 제2항 참조)
 - 1.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.
 - 2.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 - 가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 - 나.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
- 다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
- 라.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
- 마.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,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3.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의 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 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